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선우노인복지센터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연명의료 결정 제도란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 ✓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기술을
 - ✓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 ✓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단, 연명의료 유보, 중단 이행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제도 목적

-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다만,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 행위
의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
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 (의학적 판단) + (본인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
- ✓ (본인의사 확인 방법)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 연명의료계획서, ③ 가족2인 진술,
④ (환자의사 확인 불가 시)가족 전원합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

- ✓ 연명의료의 유보 · 중단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신청기관(장소) 검색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부작용 :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

혈액 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부작용 :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 출혈, 감염 등 발생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부작용 :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 탈보증 등 발생 가능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 : 기도삽관이나 기관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종 및 출혈 등 발생 가능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을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 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요구될 수 있는 치료 방법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